

## 12-아.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

### 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 :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

【원자료조사시기】 : 2026년 4~5월(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)

【공시시기】 : 2026년 6월

【공시방법】 : 간접입력(한국연구재단)

【공시내용】 : 2026년 학과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

【공시양식】 :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: (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) 2021. 4. 2. ~ 2026. 4. 1., (산학협력중점교수) 2026. 4. 1.)

(단위: 명)

기준 연도	단과대학	학과	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					산학협력중점교수			
			경력없음	산업체 경력 전임교원				채용형 전임	지정형 전임	비전임	
				1년 미만	1년 ~ 3년 미만	3년 ~ 5년 미만	5년 ~ 10년 미만				10년 이상
		합계									

### ■ 작성지침

○ '산업체 경력 전임교원'은 최근 5년 이내 신규임용된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, '산학협력중점교수'는 2026. 4. 1. 기준으로 전체 현황을 작성

※ '산업체 경력 전임교원' 중 최근 5년 이내 신규 임용되었으나, 2026. 4. 1. 기준 퇴직 교원은 제외

※ '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' 중 '산학협력중점교수'는 제외

【학과】 : 산업체 경력이 있는 전임교원이 소속된 학과를 가리키며, 대학원 소속 교원의 경우에는 "OO대학원 OO학과"로 기입

※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은 '기타(소속학과없음)'으로 분류

【산업체 경력 전임교원】 : 산업체 경력별로 전임교원 수를 구분하여 입력

【산업체 경력 범위】 :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」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함

#### 참고

※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」[시행 2025. 1. 16.]

제4조(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) 규정 제4조제4호의 '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된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'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(시설 및 군경력 포함)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
2. <삭제>
3.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(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)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
4.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
- 5~7. <삭제>

**참고**

8. 판사·검사로 근무한 경력
9. 변호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·감정평가사·변리사·건축사의 개업기간
10. 「선박직업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 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「항공법」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
1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
12. <삭제>
13. <삭제>
14. <삭제>
15. <삭제>
16.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,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할 경력
17.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
18. 공인된 상설 예·체능 및 창작·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

**【산학협력중점교수】** :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,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(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)

- ①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(산업체 경력은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1호~제4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의미함)
- ②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거나 지정된 자
  -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③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무 ④ 임용 또는 지정 방식 ⑤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 평가 및 재임용·승진 심사방법 등을 포함
  -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임용하거나 기존 전임교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, 기존 전임교원 중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 10년 미만이라도 지정 가능
- ③ 책임강의시수를 30% 이상 감면받은 자
  -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책임강의시수에서 30% 이상을 감면(비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를 기준으로 판단)
  - ※ 인정기준 마련 이전(11.9.7)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,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하라고 하더라도 학칙, 정관 또는 채용공고문을 근거로 산학협력을 중점 추진하는 교원으로 임용되었고,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 평가 및 재임용·승진 심사를 받는 자라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

**【산학협력중점교수-채용형 전임】** :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전임교원 형태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수를 입력

**【산학협력중점교수-지정형 전임】** : 최초 임용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,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전임교원 수를 입력

**【산학협력중점교수-비전임】** :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비전임교원 형태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수를 입력

※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시에는 전일제(full-time)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

**■ 참고사항**

-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은 한국연구재단(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)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
- 한국연구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